동행재가노인복지센터

운 영 규 정 개 요

Ⅰ. 기본정보 및 일반현황

기관명	동행재가노인복지센터	장기요양기관번호	24773000113
대표자	이호태	시설장	최영란
설치일자	2020.04.21	제공급여 종류	재가급여 : 방문요양
연 락 처	054) 834 - 8750	이메일	a01090467304@gmail.com
팩스번호	054) 834 - 8751	홈페이지/블로그	donghengjeka.modoo.at
소 재 지	경북 의성군 의성읍 군청길 15		
주차시설	농협, 의성초등학교, 군청 등 인근 주차장 이용가능	교통편	대중교통 및 자가이용가능
사업지역	의성군 및 타시도		
영업일 (영업시간)	(평일) 09:00~18:00 (센터사정에 의해 예외도 있음) (주말 및 공휴일) 필요시		

Ⅱ. 직원 근무체계 (2025.03.10.)

총 원	대표	시설장	사회복지사	요양보호사
88	1	1	4	82

Ⅲ. 이용대상 및 이용자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

이용대상	이용정원: 방문 요양서비스 정원 00명. (방문목욕 및 복지용구 연계)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이 있는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 인정자로 판정을 받은 자
모집방법 및 홍보	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온·오프라인을 활용한 홍보로 기타 적법한 절차 및 방법에 의한 대상자 모집 ○ 이용상담 전화 또는 내방상담 ○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한 기관홍보 ○ 유관기관 연계, 홍보 전단지 ○기존 이용계약자의 지인 소개, 근로자의 소개 등

Ⅳ.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

계약기간	계약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에 기록된 인정유효기간 내로 한다. 계약기간 중 입원 등으로 서비스가 일시적 중단 시에도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은 유효하다. 계약기간의 종료 시 또는 후에는 재계약 할 수 있다.
계약목적	이용자와 보호자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,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.
월 이용료 그 밖의 비용부담	본 기관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름.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%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고, 장기요양서비스 이외에 병원 등 외부 이동 교통비 등은 수급자 및 보호자(신원인수인)가(이) 전액 부담함.
신원인수인의 권리	-서비스 대상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-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-서비스 제공 계약에 대한 서비스 이용을 주장할 권리 -대상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
신원인수인의 의무	계약에 따른 "이용자의 주보호자"의 일체 채무의 책임을 계약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질 의무,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, 계약정보가 변경된 경우 통보 의무, 보호자 의무 이행이 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의무, 월 이용료 납부의무

<table>
<tr><td>계약의 해제</td><td>-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, 이용자의 장기입원, 시설입소, 사망 등
-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등 기타 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
-수급자가 종사자에게 성희롱.성폭력사건 발생시,서비스 이용제한 또는 해지할 수 있다
-수급자의 건강진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」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
-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
-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 및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고 서비스 대상자와 보호자의 부당한 요구로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
-수급자 및 보호자가 월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
-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 및 보호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이용기관에 종결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,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.</td></tr>
<tr><td>이용료 비용의 변경방법 및 절차</td><td>1.해당요건
-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등급, 급여내용, 자격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
-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요양급여 수가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
-수가변경,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서비스 내용이 증감되었을 경우(변경계약서로 갈음할 수 있다.)
-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등
2. 변경 방법 및 절차
-신규 및 갱신계약→계약자 상담→욕구사정 및 급여계획→급여계획통보→서비스 실시
-수가 및 자격기준변경→변경내용 안내→욕구사정 및 급여계획 통보→서비스실시</td></tr>
<tr><td>배상책임보험</td><td>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와 제공자 상해 등에 대비하여 법률상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배상보험에 가입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함. (배상책임보험, 상해보험 증권 참고)
5대 보험 가입되어 있음.
<table>
<tr><th>보험종류</th><th>보험사</th><th>보험내용</th></tr>
<tr><td>배상책임보험</td><td>MG손해보험주식회사</td><td>전문직업인 배상(대인, 대물)</td></tr>
<tr><td>단체상해공제</td><td>한국사회복지공제회</td><td>정부지원 단체상해공제(대인)</td></tr>
<tr><td>영업배상책임</td><td>KB손해보험2025.03.08</td><td>기관시설(대인, 대물)</td></tr>
<tr><td>일반화재보험</td><td>농협손해보험주식회사</td><td>시설(의성농협협동조합 가입)</td></tr>
</table></td></tr>
</table>

V.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, 급여비용 등에 관한 사항

1. 서비스내용(방문요양)

구분	세부내용	구분	세부내용
신체활동 지원		인지활동 지원(인지활동형 방문요양)	
세면도움	얼굴과 목, 손 씻기 등, 사용 물품 정리, 세면대까지의 이동 포함	인지자극활동	인지자극 프로그램 준비, 교재 또는 도구를 활용하여 프로그램 실행, 준비물품 정리
구강청결 도움	구강청결(양치질 등), 양치 지켜보기, 가글액·물 양치, 틀니손질,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	일상생활 함께하기	잔존기능 유지·향상을 위한 수급자와 함께 신체활동, 개인활동 및 가사활동을 수행
식사도움	식사 차리기, 식사보조, 구토물 정리	인지관리 지원	
몸단장	머리단장, 손발톱 깎기, 면도, 면도지켜 보기, 화장하기,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	인지행동 변화 관리 등	행동변화 감소도움 및 대처, 수급자 및 수발자 안전관리 도움, 정서적 안정과 생활의욕 향상 도움, 인지기능향상을 위한 인지활동 지원 등
옷갈아 입기 도움	의복준비(양말, 신발 포함), 지켜보기 및 지도, 겉옷 및 속옷 갈아입히기, 의복정리	정서 지원	
머리 감기 도움	세면대까지의 이동보조 포함, 머리감기, 머리 말리기,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	의사소통 도움, 말벗, 격려 등	의사소통 도움, 말벗 및 격려·위로 등 정서적 지원, 사회적 지지체계 연계와 관계망 연결, 비상연락망 준비 등 안부확인을 위한 방문 및 생활상의 문제 상담, 대화·편지·전화 등의 방법으로 수급자의 욕구 파악 및 의사 전달 대행
몸 씻기 도움	욕실이동과 몸 씻기 준비, 입욕준비, 입욕 시 이동보조, 몸 씻기(샤워 포함), 옷 갈아 입히기, 사용물품 정리	가사 및 일상생활지원	
화장실 이용하기	화장실 이동지원, 이동변기 사용 도움, 배뇨·배변도움, 지켜보기, 기저귀 교환, 용변 후 처리 지원,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	개인활동 지원	외출시 동행, 장보기, 산책, 은행, 관공서, 병원 등 방문 시 부축 또는 동행(차량 이용 포함)하고 책임 귀가
이동도움	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, 보행도움, 보조기구(보장구)를 이용한 도움	식사준비, 청소 및 주변정돈, 세탁	수급자를 위한 음식물 조리, 설거지, 주방정리, 청소 및 주변정리 정돈, 의복세탁 및 관리
체위변경	체위변경, 일어나 앉기 도움		
신체기능의 유지·증진	관절오그라듦 예방활동, 보행 및 서있기 연습 보조, 기구사용운동보조, 보장구 이용 도움, 복약도움		

2. 요양보호사 급여외 행위

근거 및 내용	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 28조 2(급여외 행위의 제공 금지) ① 수급자 또는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거나 제공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행위(이하 "급여외 행위"라 한다)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. 1.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 2.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3.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② 그 밖에 급여외 행위의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3. 장기요양 급여 및 월 이용료, 그 밖의 비용부담액

2025년 장기요양 월 한도액 및 시간당 수가					
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5등급	인지지원등급
2,306,400	2,083,400	1,485,700	1,370,600	1,177,000	657,400

구분	급여제공시간	금액(원)	본인부담금			
			일반대상자	40%감경	60%감경	기초수급자
방문요양	30분이상	16,940	2,541	1,525	1,016	0
	60분이상	24,580	3,687	2,212	1,475	0
	90분이상	33,120	4,968	2,981	1,987	0
	120분이상	42,160	6,324	3,794	2,530	0
	150분이상	49,160	7,374	4,424	2,950	0
	180분이상	55,350	8,303	4,982	3,321	0
	210분이상	61,670	9,251	5,550	3,700	0
	240분이상	68,030	10,205	6,123	4,082	0
연계	방문목욕	86,480	12,972	7,783	5,189	0
	방문목욕, 복지용구 등 연계이용 가능					

VI. 기타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

운영규정 및 취업규칙 참조	본 센터 내 비치된 규정집에서 세부사항 확인 가능함.

동행재가노인복지센터